



Vol. 07

2022.07.13.

Customs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111

F. 02-545-1682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장진명본부장 jmjang@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남형우전임 hwnam@hjcustoms.co.kr

CONTENTS

I. 법령 개정사항

II. 조세심판사례

III.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I.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관세탈루행위를 방지하고 세액보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보정을 신청하였어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세계관세기구 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관세율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부당 과소신고된 세액의 보정신청 혜택 배제 (제38조의2제6항 신설)	종전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후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소액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 (제42조제5항)	물가·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납부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의 기준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연장 (제89조제6항제1호)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물품에 한정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3년 연장하여 2024년까지 면제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함.
관세 환급 대상 확대 (제106조의2)	<p>1)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후 수출사실을 세관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p> <p>2) 여행자가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등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한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p>

구분	내용
원양어선에 사용되는 어로용품 등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 (제143조)	원양어선의 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무상(無償)으로 제공되는 어로용품 등을 하역·환적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납세신고나 환급절차 없이 어로용품을 하역·환적할 수 있도록 함.
의무 이행 요구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세관공무원의 조사 권한 근거 마련 (제227조 제3항 신설)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세관공무원에게 조사 권한을 부여함.
원산지확인위원회 폐지 (현행 제232조의3 삭제)	원산지 관련 주요 쟁점이 감소하는 등 원산지확인 위원회의 운영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원산지확인위원회를 폐지함.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통관보류 근거 마련 (제237조 제1항 제4호의2 신설)	세관장은 수출입 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국제우편물의 사전전자 정보 제출 (제256조의2 신설)	세관장은 관세청장과 우정사업본부장이 협의하여 정한 국가에서 발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세관신고 정보 등이 포함된 전자정보를 사전에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관우체국장으로 하여금 그 우편물을 반송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관세율표 정비 (안 별표)	세계관세기구(WCO)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하고, 변화된 무역환경에 맞추어 세목을 조정하는 등 관세율표를 정비함.

(3) 시행일

`22.07.01.

I. 법령 개정사항**2.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재 국민보건의 증진이라는 포괄적 용어로 규정된 이 법의 목적 규정을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재생원료의 사용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생원료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에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입법목적 등의 구체화 (제1조,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59조 제1항, 제70조의7제1항 및 제86조제3항)	현재 "국민보건의 증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 법의 목적을 "국민 건강의 보호와 증진"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제7조의5제2항 신설)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구분	내용
	<p>1)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재생원료를 제조하려는 자는 가열 · 화학반응 등에 의해 분해 · 정제하는 등의 공정을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적합성 여부에 대한 인정을 받도록 함.</p>
기구 및 용기 · 포장에 사용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등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p>2) 재생원료로 제조된 기구 등을 사용하는 영업자는 기구 등의 품질검사결과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미인정제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p>
	<p>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로 제조된 기구 등을 사용한 영업자에게 폐기조치 및 공표를 명하도록 하고,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이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p>

(3) 시행일

'22.06.10.

I. 법령 개정사항

3.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여행자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국제우편물의 전자정보를 우편물이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적재화물목록 등을 입항하거나 출항허가 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선박회사와 항공사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제무역선 등에서 구입·환불한 물품의 관세 환급절차, 국제우편물의 전자정보 제출절차, 적재화물목록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송 관련 비용범위를 확대하고, 가산세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하하며,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 절차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을 정하고,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국제무역선 등에서 구입한 물품의 환불에 따른 관세 환급절차 (제7조제2항제3호의4 및 제124조의2제2항제2호다목 신설)	여행자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하는 경우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해당 물품이 환불된 날로 정하고,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송 관련 비용의 범위 확대 (제20조제5항)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운송 관련 비용'의 범위에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 뿐만 아니라 비용의 부담주체와 관계없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 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
가산세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인하 (제39조제1항)	가산세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금융회사 등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인하함.

구분	내용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절차 구체화 (제203조)	<p>1)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세작업의 종류 · 기간 및 장소 등뿐만 아니라 작업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품명 · 규격 등도 신청서에 적어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p> <p>2)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재해 등의 사유로 작업기간 연장 또는 작업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세관장에게 1년의 범위에서 작업기간 연장 또는 작업장소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p>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259조의4 및 제259조의5 신설)	<p>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매년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평가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통관절차 및 관세 행정상의 혜택 제공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p> <p>2) 관세청장은 전자문서 위조 · 변조죄나 밀수출입죄 등을 범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p>
국제우편물의 전자정보 제출절차 (제259조의8 신설)	통관우체국의 장은 국제우편물이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에 우편물 번호, 발송 · 도착 예정 일시 등의 전자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구분	내용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 인상 (제277조제4항)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여 관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로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인 경우 포상금 산정에 적용되는 지급률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함.
적재화물목록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별표 5 제2호자목, 차목, 거목 및 더목 신설)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와 항공사가 적재화물목록 등을 입항하거나 출항허가 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1차 위반 시 6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시행일

'22.07.01

I. 법령 개정사항

4.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식품 제조기술 발달, 냉장유통 체계 등의 환경 변화에 발맞춰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식품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 등에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 대신 제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021. 8. 17.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유통기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식품 등에 대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에 「생산연월일」을 추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추어 「특수용도식품」을 「특수영양식품 및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유통기한 관련 규정 정비 (제2조 제2호)	식품 등에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 대신 제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생산연월일, 소비기한」으로 표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용어의 정비 (별표 1 제1호 가록 및 별표 1 제3호 다록)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추어 「특수용도식품」을 「특수영양식품 및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정비.

(3) 시행일

'22.06.07

I. 법령 개정사항

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실사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245호, 2020. 4. 7. 공포, 2021. 7. 1. 시행 및 법률 제17807호, 2020. 12. 29. 공포, 2021. 7. 1. 시행)됨에 따라, 배추김치를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제조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는 수입식품으로 정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인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축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수출국 정부와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해외제조업소 등록 기준 정비 (안 제2조제1항)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에 허가·등록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업소의 인증 절차 등 (안 제3조의2 신설)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업소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요건을 갖추고, 인증신청서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도록 함.

구분	내용
조건부 수입 검사 제외 대상의 축소 (안 제31조제5항)	종전에는 최근 2년 이내에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수입식품 등은 모두 조건부 수입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식품 등의 제조·가공 등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만 조건부 수입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동일사·동일수입식품 등에 대한 요건 완화 (안 별표 10 제4호)	종전에는 수입식품 등을 최초로 수입하면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5년간 해외제조업소 및 제품명 등이 동일한 식품 등은 동일사·동일수입식품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에 대한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5년간 동일사·동일수입식품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함.

(3) 시행일

'22.07.01

6.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식품 등에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 대신 제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45호, 2021. 8. 17. 공포, 2023.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86호, 2022. 6. 7. 공포 ·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유통기한」 관련 규정을 「소비기한」으로 정비하고,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하여 냉장 보관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인 냉장보관하는 우유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31년 1월 1일까지 유통기한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식품 등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생산연월일」과 「산란일」을 추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유통기한 관련 규정 정비 (제15조 제2호, 별표 1, 별표 3, 별표 7 일부)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유통기한」 관련 규정을 「소비기한」으로 정비. (다만,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하여 냉장 보관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인 냉장보관하는 우유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31년 1월 1일까지 유통기한을 계속 사용)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제3조 제1항 제7호)	식품 등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생산연월일」과 「산란일」을 추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함.

(3) 시행일

‘22.06.30

II. 조세심판사례

1. 쟁점로열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가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AAA”라 한다)와 완제품 DDD의 제조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6.1.4.부터 2016.7.27.까지 OOO 소재 OOO(이하 “EEE”라 한다) 및 OOO가 중개한 제3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와 OOO건으로 완제품 제조에 필요한 OOO 및 포장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였다. 한편, AAA는 OOO(이하 “BBB”라 한다) 그룹의 브랜드 DDD와 관련된 상표권 등의 권리자인 BBB Holdings와 라이선스 계약(이하 “쟁점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혁신 및 기술사용에 대한 대가(이하 “쟁점로열티”라 한다)를 지급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인 청구법인으로부터 2018년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제출받고, 2019.1.4. 쟁점로열티가 OOO 및 포장재의 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9.1.10.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쟁점로열티를 가산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12.31. 처분청에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OOO 수정신고금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2021.2.23., 2021.2.25. 및 2021.2.26. 각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정요지 : 심판청구 기각

쟁점로열티에는 담배의 제조와 관련된 자적재산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에는 00 그룹이 자사 브랜드 담배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하우가 체화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00 그룹의 담배 제조 노하우에 따라 쟁점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로열티와 쟁점물품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로열티의 지급주체가 아니라는 점만으로 쟁점물품과 쟁점로열티 사이에 거래조건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됨.

(3) 결정일

2022.04.26. (조심 2021 관 0074)

II. 조세심판사례

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 6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16.3.8.부터 2020.6.29.까지 싱가포르 소재 AAA 및 BBB(이하 이들을 합하여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00 외 000건으로 고혈압 치료제 CCC(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이하 “제1방법”이라 하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 35조까지를 순차적으로 “제2방법”부터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10.21.부터 2021.2.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 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제1방법을 부인하고, 제6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21.1.18. 및 2021.3.3. 청구법인에게 관세 00원, 부가가치세 00원 및 가 산세 00원, 총합계 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3.16. 처분청에 쟁점부과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000 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26. 01 를 거부(이하 “쟁점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4. 및 2021.5.26. <별지1> 기재와 같이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결정요지 : 재조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매년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2015 년 이후 복제의약품의 출시로 인해 판매 및 시장상황이 변화하였을 것임에도 특 정한 해의 매출총이익률만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 5 년 동안 수입된 물품에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복제의약품 이외의 추가적인 고혈압 치료제 제품군 의 수입여부 등을 확인하여 평균적인 매출총이익률 등을 반영하거나 20xx 년 이후 국내 복제의약품 출시에 따른 매출액 등 판매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에 적용될 합리적인 매출총이익률을 재조사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결정일

2022.06.13. (조심 2021 관 0056)

III.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관세청, 누리집을 통한 비가공증명서 종합 서비스 제공

관세청은 6 월 20 일부터 국내외 기업들이 환적화물 해외통관시 사용되는 비가공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는 화물이 환적되는 동안 하역, 재선적, 운송상 필요한 작업 또는 화물을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자유무역협정(FTA)상 제 3 국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등을 위해 필요하다.

비가공증명서 발급·활용 사례

폐루 소재 A사는 싱가포르로부터 부산항을 거쳐 경화제를 수입하면서 싱가포르-폐루 FTA 특혜관세(4%→0%)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 입증을 위해 부산 세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비가공증명서를 제출

비가공증명서는 최종 수입국(목적국) 화주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환적 관련 물류업체가 세관에 신청하여 발급을 받으며, 전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확대되면서 협정 적용을 위한 운송요건 증명의 일환으로 비가공증명 수요가 증가함에도, 최근 3년간 발급실적은 평균 1,564 건으로, 연간 약 8,000 건을 발급하는 싱가포르나 연간 2,300 여건(한국행 화물)을 발급하는 홍콩에 비해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비가공증명 누리집 운영을 통해 국내외 환적 관련 기업들의 비가공증명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비가공증명이 필요한 환적화물의 유입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환적화물의 경우 하역작업으로 인한 환적국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크기 때문에 주변국들에서도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환적화물 유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비가공증명 요건을 연말까지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화물의 분리, 포장, 재포장, 표시, 라벨링, 봉인의 부착 또는 변경에 관하여 비가공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관세청 비가공증명 누리집 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Korean Customs website's 'Non-authenticated Notarization' section.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국가상장' (National Notarization), '관세법령정보포털' (Customs Law and Regulation Information Portal), 'ENGLISH', and social media icons. A search bar is also present.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large banner titled '비가공증명제도' (Non-authenticated Notarization System). Below the banner, there are three tabs: '비가공증명제도' (selected), '발급내역조회' (Query of Issuance Record), and 'FAQ 및 공지사항' (FAQ and Notices). On the left, a sidebar menu lists categories: '수출입 통관' (+), 'FTA' (+), '비가공증명' (- selected), '개인 통관' (+), and '기업부담 완화제도' (+). The '비가공증명' category contains links for '비가공증명제도', '발급내역조회', and 'FAQ 및 공지사항'. The right side of the content area contains sections for '비가공증명서' (Non-authenticated Notarization Certificate) and '활용' (Usage), which include bullet points about its application in various scenarios like FTA and customs declarations.

▶ 누리집은 국문과 영문으로 제공되며, ‘www.customs.go.kr》 관세행정》》
비가공증명’ 순서로 접속

▶ 화면구성은 비가공증명제도, 발급내역조회(진위확인), 자주 묻는 질문 및
공지사항으로 구성

▶ 누리집 내에서 직접 비가공증명서 발급신청 및 발급내역 확인, 발급받은
비가공증명서가 세관 전산망에 기록된 발급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서비스 등을 이용 가능

III. 관세 및 FTA 관련 동향**2.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D) 공인받고 인도네시아 수출 보다 쉽고 빠르게**

한국 - 인도네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상호인정약정’)이 6월 30일부터 발효되었다. 상호인정약정은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는 관세청에서 공인받은 기업에게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검사 축소, 신속 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전 세계 97 개국이 도입 중이며, 우리나라는 2019년 4월부터 인도네시아와 협상을 시작하여 2020년 2월 상호인정약정에 최종 서명했다.

이후, 양국은 상호인정약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세관절차상 혜택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이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상호인정약정이 발효되면서 6월 30일부터 양국의 공인기업은 수출상대국 세관에서 검사를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통관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미국·중국·일본 등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으며 앞으로 관세청은 중동·베트남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늘려갈 계획이다.

우리나라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현황	
국가명	비고
(‘10)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11) 일본, 뉴질랜드 (‘13) 중국 (‘14) 홍콩, 멕시코, 터키 (‘15) 이스라엘, 도미니카(공), 인도, 대만 (‘16) 태국 (‘17) 호주, UAE, 폐루, 말레이시아 (‘20) 인도네시아	발효
(‘17) 우루과이 (‘19) 카자흐스탄, 몽골	발효 준비